



법무법인 해원

THANKSLAW OFFICE



법무법인 해원

법무법인 해원은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능동적(Aggressive)이고, 신속(Speedy)하며
집중적인(Concentrative)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윤기창
Yoon Ki-chang



업무 영역 Practice area

게임 콘텐츠 분야 Game content

THANKSLAW OFFICE



법무법인 해원은 게임 콘텐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구비한 로펌으로서 120여개의 기업, 공공기관, 행정청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에 대한 사전등급분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게임산업법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신청, 내용수정신고 및 자체등급분류제도 등에 대하여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행성에 대한 규제

현재 가장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임물의 사행성 부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해원은 다수의 소송업무 및 법률자문 경험을 통해 게임물의 사행성 판단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며, 특히 웹보드 게임에 대한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상의 규제, 사행성을 사유로 한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이나 내용수정신고반려처분, 아케이드 게임물의 OIDD문제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
게임물은 영상, 음악, 텍스트, 캐릭터, 세계관 등 수많은 콘텐츠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이나 서버의 복제, 코드의 역분석 (Reverse Engineering) 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저작권, 영업비밀, 퍼블리시티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게임물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갖는 특징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게임물 자체나 게임물을 구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거나 법적 분쟁을 예방·해소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 및 계약서의 작성

–
프로그램·디자인 도급계약, 게임 프로젝트 투자계약, 퍼블리싱(Publishing) 계약, 채널링(Channeling)계약, 게임물 양도·양수계약 등 주요계약은 그에 따른 권리관계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게임물 자체와 그에 부수한 디자인, 음악, 이용자 정보, 관련 상품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바,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해원은 기업법무에 특화된 법인으로서, 금융, 건설, 항만, 국제거래, 인수합병 등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에 대하여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특히 게임 콘텐츠 분야에서는 게임물의 개발과 유통,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검토·작성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분야

-

법무법인 해원은 게임 표준약관의 검토, 게임 아이템의 거래, 모바일 플랫폼 입점, 모바일 결제와 IAP, 오토프로그램, 해킹, 확률형 아이템과 그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임 콘텐츠 분야 업무 사례

-

소송업무

등급분류거부처분취소의 소, 내용수정반려처분취소의 소, 등급분류결정취소처분취소의 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의 소, 게임물확인 등의 소, 각종 행정심판 등 외 다수

법률자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검토, 구글플레이(Google Play) 자체등급분류협약의 검토, 스팀(Steam)유통 게임물의 등급분류주체에 대한 검토, 항공기 내 게임물 제공사안 검토, 불법 개·변조 게임물 단속가능성에 대한 검토, 소위 “어플방”에 대한 법적 검토, 자동버튼누름장치(소위 “똑딱이”)의 법적 검토, 게임 내 사용된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검토, 모바일 게임물 다운로드 방식에 대한 검토, 게임표준이용약관 검토, 민간등급분류기구 업무위수탁계약 검토, OIDD상호표시 여부에 대한 검토, OIDD 하자 및 대응책의 검토, Chromecast 관련 사항 검토,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검토 등 외 다수



ADDRESS

(우)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7층 (신한은행 건물)

Tel : 051-507-0532
Fax : 051-507-0535

E-mail : mail@thankslaw.co.kr
website : www.thankslaw.co.kr

